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512호
- 나. 제 출 자 : 이병도 의원(찬성자 26명)
- 다. 제 출 일 : 2023년 2월 6일
- 라. 회 부 일 : 2023년 2월 9일

2. 제안이유

- 가. 서울시 디자인산업담당관 신설로 서울디자인재단의 사업을 다각화하여 디자인 문화 확산 및 디자인산업 진흥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서울디자인창업센터를 디자인재단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기존 서울디자인지원센터와 유기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호)
- 나. 디자인산업 지원 및 문화 확산 사업으로 명시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함(안 제4조제4호 신설)

4. 검토의견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22년 8월 서울시 디자인산업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디자인재단의 디자인산업지원 기능을 확대하고 현행화하여 디자인 문화 확산과 디자인 산업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사항 검토

【 재단 사업의 현행화 (안 제4조제2호) 】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4조제2호에서 서울디자인재단(이하 재단)의 사업으로 “서울디자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운영만을 규정하여 기존 디자인 전문회사나 디자이너, 중소기업과 관련된 지원이 주된 사업으로 보이는 한계가 있었으나 “서울디자인창업센터(이하 창업센터)”를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센터”와 “창업센터”가 유기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하려는 것임
- “창업센터”는 서울시 일자리 창출과 혁신창업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차세대 청년디자이너들의 활발한 스타트업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7월 개관한 이래 줄곧 재단에서 운영해왔기에 이를 ‘재단의 사업’으로 조례에 반영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임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재단 사업의 확대 (안 제4조제4호) 】

- 디자인산업담당관의 신설 및 디자인서울 2.0 추진에 따라 시 사업부서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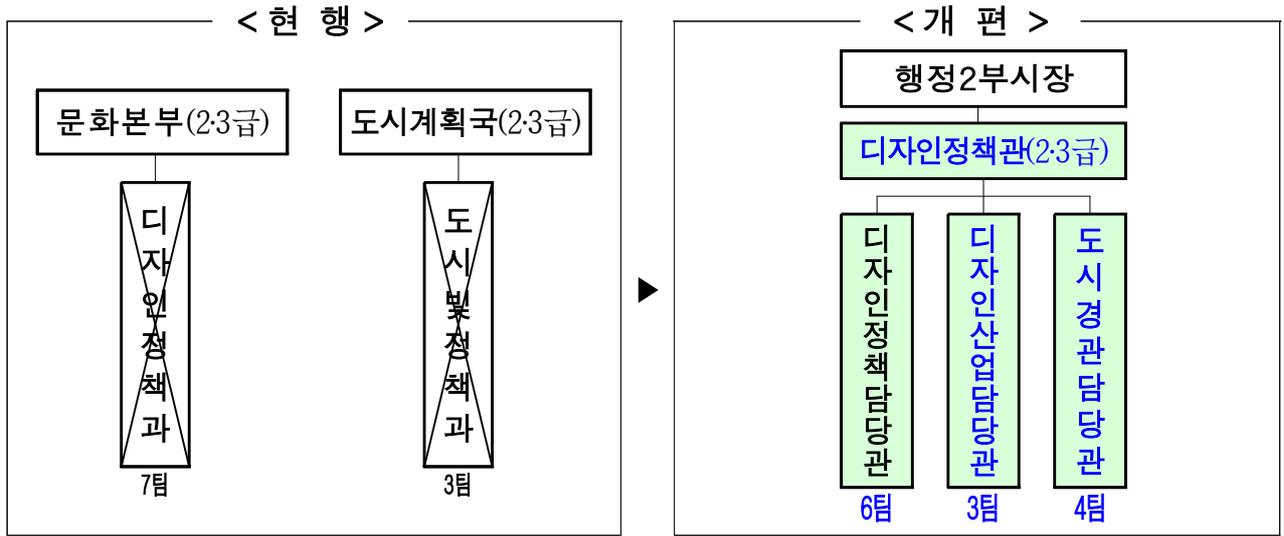
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재단에서는 정관을 변경(개정 2022.12.30.)하고 ‘산업지원실’을 신설하는 등 직제를 개편하여 재단의 디자인산업지원 기능을 강화한 바 있음. 따라서 현행 조례에 ‘디자인산업 지원 및 문화 확산’을 재단의 사업으로 명시함으로써 재단이 이와 관련한 각종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현행 | 개정안 |
|---|--|
|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략) 2. <u>서울디자인지원센터</u> 의 운영 3. (생략) <신설> 4. ~ 8. (생략) | 제4조(재단의 사업) ----- -----. 1. (현행과 같음) 2. <u>서울디자인지원센터 및 서울디자인창업센터</u> ----- 3. (현행과 같음) 4. <u>디자인산업 지원 및 문화 확산</u> 5. ~ 9. (현행 제4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

다. 종합 의견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의 업무 범위에 “창업센터”를 포함하여 현재 운영 중인 사항을 반영하고, ‘디자인산업 지원 및 문화 확산’ 조항을 신설하여 재단의 사업을 다각화하며 디자인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입법취지가 인정된다 할 수 있음. 다만, “창업센터”는 ’20.7월 개관하여 재단이 운영해온 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뒤늦은 감이 있으며, 향후 소관부서인 디자인정책담당관은 재단 관련 사항이 적기에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행정2부시장 직속기구 신설



○ 디자인산업담당관 신설

